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
정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10일, 김상훈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위원회(2025.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정보위원회(2026.2.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상훈의원)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하고, 그 중 특정 직직원은 직급에 따른 계급 정년을 정하고 있음. 또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공무원임용령」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¹⁾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비혼이나 난임 등으로 자녀가 없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차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자녀 직원의 정년 연장 관련, 공부(公簿)상의 입양 등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년 연장 혜택을

1)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소속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각 직급 구간별로 여러 차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평성 논란이 증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정보원 직원 연령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연령정년과 동일하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성권)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